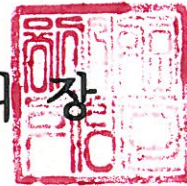


제2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2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용인시의회의장



1. 조례안 예고 현황

구분	조례명	발의자(제출자)
총계	2건 (제정 1건, 일부개정 1건)	
1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재욱, 안희경, 김상수, 김운봉, 남홍숙, 신민석, 윤원균 의원 대표 발의자 : 김운봉 의원
2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명지선, 남홍숙 의원 대표 발의자 : 명지선의원

2. 조례안 : “별첨 참조”

3. 의견제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031-324-2538 전자우편) aar2005@korea.kr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조항)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